

#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호 | 1832 |
|-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1. 11. 8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개정 (안 제3조, 제4조)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산정기준 구체화
  - ※ 해당지역의 월별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구청장이 1.3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를 1.1로 개정
- 상위법에 폐기물 처리비용 및 처리시설의 형식과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정조정위원회 의결 삭제(안 제4조)

### 나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 조항 삭제(안 제7조 ~ 제11조)

- 폐촉법 관련 택지개발부담금 사용을 위한 울산광역시와 구·군 협약서(2012. 11. 15.)에 따라 택지개발부담금 일체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기금으로 입금
- 제7조 기금의 설치, 제8조 기금의 재원, 제9조 기금의 용도, 제10조 기금의

운용·관리,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 삭제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(안 제1조 ~ 제4조)

### 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나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

### 4. 전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(여성가족과-35815호, 2021. 9. 23.)

라. 입법예고: 2021. 9. 27. ~ 10. 18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
2. “사업시행자”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납부의무자”란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 비용 산정기준)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(m<sup>2</sup>)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납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납부계획서 제출 등)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인·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

1. 사업 명칭
2. 사업시행 기간
3.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
4. 건립예정 주택 현황
5.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
6. 납부 예정일, 납부방법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후 납부금액, 납부기한 등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###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(제3조 관련)

$$\text{설치납부금액} = 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 + \text{시설 설치비}$$

1.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 = \text{시설 부지 면적} \times \text{부지 매입단가}$$

가. 시설 부지 면적(㎡)

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.

$$\text{시설 부지 면적(㎡)} = [1) + 2)] \times 100 \div \text{건폐율(\%)}$$

1) 폐기물처리시설 면적

| 시설용량                | 소요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0톤/일 미만            | 73.2㎡ × 시설용량                |
| 50톤/일 이상 100톤/일 미만  | 3,660㎡ + 20㎡ × (시설용량 - 50)  |
| 100톤/일 이상 300톤/일 미만 | 4,660㎡ + 25㎡ × (시설용량 - 100) |
| 300톤/일 이상 500톤/일 미만 | 9,660㎡ + 5㎡ × (시설용량 - 300)  |
| 500톤/일 이상           | 11,000㎡ + 5㎡ × (시설용량 - 500) |

2) 주민편익시설 면적

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

나. 부지 매입단가

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(㎡)당 조성원가. 다만,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.

2.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시설 설치비} = \text{소각시설 설치비} + \text{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} + \text{주민 편익시설 설치비}$$

가. 소각시설 설치비

$$\text{소각시설 설치비} = 1) \div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 \times 6) \times 7)$$

- 1) 생활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)의 배출량(톤)
- 2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
- 3)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
- 4)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 1.1
- 5)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.2
- 6)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- 7)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나.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

$$\text{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} = 1) \div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 \times 6) \times 7)$$

- 1) 음식물류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)의 배출량
- 2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
- 3)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
- 4)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 1.1
- 5)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.2
- 6) 사료화 시설, 퇴비화 시설,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- 7)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다. 주민편익시설 설치비

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

## 근 거 법 규

### 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(宅地)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 8. 13., 2015. 2. 3.,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내야 한다. <신설 2020. 6. 9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13., 2020. 6. 9.>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. <개정 2013. 8. 13., 2020. 6. 9.>

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,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6. 9.>

### □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) ⑤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[별표 5]

납부금액 산정 기준(제4조제5항 관련)

납부금액 = 시설 설치비 + 시설 부지 매입비

1.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시설 설치비 = 가(소각시설 설치비) + 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) + 다(주민편익시설 설치비)

가. 소각시설 설치비

소각시설 설치비 = 1) × 2) × 3) × 4) × 5)

- 1) : 해당 택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 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) 배출량(톤)
2) : 변동계수(1.3 미만,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함.)
3) : 가동률(1.2)
4) :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5) :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나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

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= 1) × 2) × 3) × 4) × 5)

- 1) : 해당 택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류 폐기물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) 배출량
2) : 변동계수(1.3 미만,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정함.)
3) : 가동률(1.2)
4) :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(사료화, 퇴비화, 바이오가스화시설 등)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
5) : 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

### 다. 주민편익시설 설치비

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[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]

#### 비고

1. “가동률”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보수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폐기물처리 시설 가동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한 값을 말한다.
2. 해당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납부금액 통보시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실시설계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“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”, “지상시설은 1, 지하시설은 1.4”를 각각 적용하지 않고, “톤당 실시설계 단가”를 적용할 수 있다.
3. 나목 중 “폐기물 처리시설 종류(사료화, 퇴비화, 바이오가스화시설 등)”는 해당지역을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를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2.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|  |
|--|
| $\text{시설 부지 매입비} = \text{가(시설 부지 소요면적)} \times \text{나(부지 매입단가)}$ |
|--|

가. 시설 부지 소요면적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각각 시설 부지 소요면적을 계산해내 합한다.

1) 시설 부지 소요면적(m<sup>2</sup>)

시설 부지 소요면적(m<sup>2</sup>) = [가) + 나) + 다) + 라)] × 100/건폐율(%)

가) 폐기물처리시설 면적[시설용량(톤/일) × 소요면적(m<sup>2</sup> · 일/톤)]

나) 주민편익시설 면적(m<sup>2</sup>)

다) 관리동 면적(m<sup>2</sup>)

라)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(m<sup>2</sup>)

2) 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

가) 시설부지 면적

| 구 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요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가면적                     |  |
| 폐기물<br>처리시설   | 50톤/일 이하               | 3,000m <sup>2</sup>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
|               | 50톤/일 초과<br>100톤/일 이하  | 3,000m <sup>2</sup>                    | 20m <sup>2</sup> /톤      | 1기 기준 4,000m <sup>2</sup> (1,212평)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| 100톤/일 초과<br>300톤/일 이하 | 4,000m <sup>2</sup><br>(100톤/일 기준)     | 25m <sup>2</sup> /톤      | 2기 기준 9,000m <sup>2</sup> (2,727평) 이하<br>1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    |
|               | 300톤/일 초과<br>500톤/일 이하 | 9,000m <sup>2</sup><br>(300톤/일 기준)     | 5m <sup>2</sup> /톤       | 2기 기준 10,000m <sup>2</sup> (3,030평) 이하<br>3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   |
|               | 500톤/일 초과              | 10,000m <sup>2</sup> /톤<br>(500톤/일 기준) | 5m <sup>2</sup> /톤       | 2~4기 기준 15,000m <sup>2</sup> (4,545평) 이하<br>500톤 초과물량 추가면적 산정 합산 |
|               | 관리동                    | 500톤/일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30m <sup>2</sup> (100평) | -  |
|               | 500톤/일 초과              | 500m <sup>2</sup> (152평)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업인원 50명 이상 70명 미만 기준  |
| 세차동 등<br>기타시설 | 500톤/일 이하              | 330m <sup>2</sup> (100평)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
|               | 500톤/일 초과              | 500m <sup>2</sup> (152평)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

비고: 구분란 중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.

나) 주민편익시설 면적은 가) 표에 따른 시설 부지면적(폐기물처리시설, 관리동,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)의 20퍼센트(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,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를 말한다)

나. 부지 매입단가

- 1)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(m<sup>2</sup>)당 조성원가.
- 2)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납부금액”이라 한다) 계산해서 정할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외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단가를 적용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### 3. 작성자

- 소 속: 환경미화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성 명: 홍 종규
- 연락처: (052)290-3781